

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.



교육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」 제정 알림

1. 관련 : 「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」(교육부고시 제198호, 2019.9.17.제정)
2.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, 교육제공인력 요건, 교육과정의 기준을 정한 「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」가 공포·시행(교육부 고시 2019-198호)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 동 개정 법령은 2019.9.17일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(<http://www.law.go.kr>)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「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」 1부. 끝.

교육부장관



수신자 각실과, 광역자치단체, 시도교육청, 중앙부처(처), 중앙부처(부), 중앙부처(청),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

주무관 권정은 지방교육행정사 오영민 장애학생진로교전결 09/17
무관 육림장 이홍열

협조자

시행 특수교육정책과-4368 (2019.09.17.) 접수 평생교육과-9784 (2019.9.17.)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, 14동 교육부 (어진동) / www.moe.go.kr
전화 044-203-6777 /전송 044-203-6687 / kje6733@korea.kr / 대시민공개